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신체활동장려 사업’ 도입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0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주류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의 준수사항 법률 상향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공포, 2021. 0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음주를 해서는 안되는 아동·청소년을 주류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인증제도 도입 (안 제7조 신설)

-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 제시가 요구됨.
- 2) 건강친화제도 시행 여부 등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인증기준을 고시에 마련하도록 하고, 건강친화기업인증신청서 서류 및 건강친화기업인증과 관련한 심의규정, 인증서 재발급, 건강친화기업 인증 업무

위탁 규정 등을 마련함.

나.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안 제7조의2 신설)

- 1) 건강친화기업 인증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인증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 2) 인증기준 검토 등 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의 역할·구성·임기 등을 마련함.

다. 인증심사 비용 감면 (안 제7조의3 신설)

- 1) 인증심사에 필요한 비용부담 규정이 필요함.
- 2) 인증심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감면기준은 고시에 정하도록 함.

라.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안 제8조 신설)

- 1)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규정이 필요함.
- 2)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홍보·컨설팅·교육 등 지원 가능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함.

마.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 (안 제9조, 안 제9조의2 신설)

-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 규정이 요구됨.
-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인증 받은 기업이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조사 등을 규정함.

바.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제10조제2항 개정)

- 1) 법 개정에 따라 경품 및 금품 제공 내용 표시 금지, 임신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 묘사 금지,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 묘사 금지, 경고문구 표시 의무,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 표시 금지 등 법률로 상향된 주류광고 내용 기준을 삭제함

2)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하며, 행사 후원시 후원자 명칭 외에 제품 광고 금지 등 금지 기준을 신설함

사.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 (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신설)

1) 법 개정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정이 필요함.

2)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신체활동장려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이 인증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친화기업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강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건강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친화기업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 업무를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한다.

제7조의2(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3.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인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직업건강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④ 제7조의2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의3(인증심사 비용)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건강친화 교육 실시

4. 건강친화 프로그램 보급

5. 건강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9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기업은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법 제7조제2항제1호”를 “법 제8조의2제2항제6호”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10조제2항”을 “제8조의2”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 수립)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

나. 그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신체활동증진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신체활동장려사업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사업
2.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홍보·캠페인 사업
3. 신체활동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사업
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제11호”를 “법 제25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사업
6. 음주폐해예방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제32조제1항제6호 중 “체육활동”을 “신체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강증진을 위한 음주폐해예방 관련 업무

제33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중전의 제1호) 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3항의 경우: 해당 금연 또는 금주구역”으로,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해당한다)”로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별표 1의 제목 중 “광고의 기준”을 “주류광고 금지의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을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7호 중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주문형 비디오의 재생 전·후의 광고를 포함한다):7시부터22시까지의 광고방송

9.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 후원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간판, 디지털광고물, 현수막, 벽보, 교통시설·교통수단(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은 제외한다)에 광고(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별표 5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200	300	500
나.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	200	300	500

별표 5 제2호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 우	법 제34 조제3항 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별표 5 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차목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 제33조제2항제4호, 별표 1, 별표 5제2호다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u> <u>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이 인증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u> <u>1. 건강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u> <u>2.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u> <u>3. 그 밖에 건강친화경영 운영</u>

과 관련된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친화기업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신 설>

기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 업무를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한다.

제7조의2(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3.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인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

<신 설>

<신 설>

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직업건강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④ 제7조의2에 따른 위원의 임
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
명한다.

제7조의3(인증심사 비용)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
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
이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심사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신 설>

촉진)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보
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
한 홍보

2.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건강친화 교육 실시

4. 건강친화 프로그램 보급

5. 건강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건강친화 직장환경
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9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유효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을 연장받으려는 기업은 인증유

<신 설>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① 삭제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고는 별표 1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광고내용의 변경 및 광고의 금지절차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광고기준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

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6호-----
-----.

제11조(광고내용의 변경 및 광고의 금지절차등) -----
-- 제8조의2-----

고의 금지를 명하려면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기

본계획 수립)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

나. 그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신 설>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신체활동증진정책수

립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신체활동장려사업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

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

다.

1. 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

사업

2.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홍보·

캠페인 사업

제30조(기금의 사용) <u>법 제25조제1항제11호</u>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2. (생략) 3. <u>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u> 4.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2조(업무위탁) ① <u>법 제29조제2항</u>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건강증진을 위한 <u>체육활동</u>에 관한 사항 7. · 8. (생략)	3. <u>신체활동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사업</u> 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기금의 사용) <u>법 제25조제1항제12호</u>----- -----. 1. · 2. (현행과 같음) <u><삭제></u> 4. (현행과 같음) 5. <u>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사업</u> 6. <u>음주폐해예방을 통한 건강증진사업</u> 제32조(업무위탁)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신체활동</u>----- ----- 7. · 8. (현행과 같음)
---	--

<신 설>

② · ③ (생 략)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신 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 제2
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
3항(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
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
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2. · 3. (생 략)

4. 법 제34조제3항(법 제9조제7
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
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
청장

9. 건강증진을 위한 음주폐해예
방 관련 업무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
호의2의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

1의2.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
--

2.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4조제3항의 경우: 해당
금연 또는 금주구역-----
----- 해당한다)-----

--

주류광고 금지의 기준(제10조제2항관련)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5. 삭제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방송을 하는 행위

가.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주문형 비디오의 재생 전·후의 광고를 포함한다):7시부터22시까지의 광고방송

나. 라디오: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

7.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사용하는 행위

8. 알콜분 17도이상의 주류를 광고방송하는 행위

9.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 후원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

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간판, 디지털광고물, 현수막, 벽보, 교통시설·교통수단(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은 제외한다)에 광고(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이 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200	300	500
나.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	200	300	500
다.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	170	330	500
마.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75	150	300

바.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2호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사.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70	330	500

아.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 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 조제1항제 3호	170	330	500
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 조제1항제 4호	170	330	500
차.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 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 조제2항 제3호	75	15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연 락 처	(044) 202 - 2821